

생명공학연구센터 운영규정 신규대비표

현행	개정	사유
생명공학연구센터 운영규정	생명공학연구센터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 부설 생명공학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세칙 은 포항공과대학교(이하 " 대학 "이라 한다) 부설 생명공학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의 조직 및 운영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제15조와 중복됨.
(신설)	제2조(명칭) 센터의 명칭은 "생명공학연구센터(POSTECH Biotech Center, PBC)"이라 한다.	센터 영문명 명시
제3조(센터의 설립목적) 대학의 생명공학분야 우수인력 및 연구 잠재력과 포스코(POSCO) 등 참여 기관들과의 산학 협동 체제를 바탕으로 첨단 생명공학 연구를 수행하며,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결과를 사업화하여 국가 생명공학 연구 및 산업의 발전과 인류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 발전한다.	제3조(설립목적) 센터의 설립목적 은 대학의 생명공학분야 우수인력 및 연구 잠재력과 포스코(POSCO) 등 참여 기관들과의 산학 협동 체제를 바탕으로 첨단 생명공학 연구를 수행하며,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결과를 사업화하여 국가 생명공학 연구 및 산업의 발전과 인류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 발전하는 것 이다.	
제4조(중점 연구분야) ① 센터에는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점 연구분야를 둔다. ② 중점 연구분야는 연구의 유연성과 연구 분야간 상호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매트릭스 조직으로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한다.	(삭제)	불필요 규정 삭제
제5조(조직) 센터의 조직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조직) 센터의 조직은 별지 서식 1 과 같다.	
(제7조 이동)	제5조(센터장) 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센터 업무를 통할한다.	현행 제7조 이동 임명기준 상위규정 준용
제6조(센터원) ① 센터에는 센터 참여교수, 연구원, 행정원 및 기술원을 둔다. 1. "센터 참여교수"란 대학의 전임 또는 비전임교수로서 센터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연구, 사업, 운영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교원을 말한다. 2. "연구원"이란 센터 또는 센터에 속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삭제)	규정 단순화 (부설연구소설립 및 운영규정에서 명시하는 사항임)

<p>계약직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말한다.</p> <p>3. "행정원"이란 기획예산, 연구기획 및 관리, 건물 및 기기관리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또는 대학의 직원을 말한다.</p> <p>4. "기술원"이란 동물실, 중점기술실, 공동기기실 등의 기기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직원을 말한다.</p> <p>② 연구원, 기술원 및 행정원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p> <p>③ 행정원 및 기술원의 임용은 대학의 직원 인사규정과 임용절차에 따르되 인건비는 센터에서 부담한다.</p>		
<p>(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 이동)</p>	<p>제6조(참여교수) ① 센터 참여교수란 대학의 전임 또는 비전임 교수로서 센터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연구, 사업, 운영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교원을 말한다.</p> <p>② 센터의 연구, 사업, 운영 등의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교수는 별지 서식 2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센터 참여교수의 승인여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결정한다.</p>	<p>제6조 제1항 제1호의 참여교수 정의 이동 (현행유지)</p>
<p>(제9조 이동)</p>	<p>제7조(센터입주) ① 센터 참여교수의 센터 입주는 프로그램 책임자의 추천서, 바이오테크 포텐셜(Biotech Potential), 센터시설 및 기술운영기여도, O/H 수입 등 센터 재정운영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허가하되, 운영위원회 심의와 센터장의 승인절차를 따른다.</p> <p>② 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센터 참여교수는 별지 서식 3의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현행유지)</p>
<p>제7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업무를 통할한다.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p> <p>② 센터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제5조로 이동)</p>	<p>직제상 센터장이 앞에 나오도록 이동</p>
<p>(제14조 이동)</p>	<p>제8조(재정 및 회계) ① 센터의 회계는 대학회계 내 별도의 구분회계로 관리한다.</p> <p>② 센터는 연구수입,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을 재원으로</p>	<p>제15조 통합 교육수입 삭제(발생하지 않음)</p>

	<p>독립채산제로 운영하되 매 회계연도 말에는 총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한다.</p> <p>③ 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의 인건비와 행정운영비는 센터에서 부담한다.</p> <p>④ 센터 시설 및 장비유지관리비, 유틸리티비 및 관리운영비는 대학과 실비 정산한다.</p> <p>⑤ 센터에서는 재정 자립화 및 특별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년도 말 잉여금 중 일부를 적립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p>	
<p>제8조(센터 참여교수의 운영) ① 센터의 연구, 사업, 운영 등의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교수는 별지 서식 2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센터 참여교수의 승인여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결정한다.</p>	(제6조로 이동)	
<p>③ 센터장은 필요시 외부교수를 초빙하여 연구를 참여시킬 수 있다.</p> <p>④ 외부 참여교수에 대한 지원기준은 따로 정한다.</p>	(삭제)	외부교수 초빙 권한이 사실상 없음
<p>제9조(센터입주) ① 센터 참여교수의 센터 입주는 프로그램 책임자의 추천서, 바이오테크 포텐셜(Biotech Potential), 센터시설 및 기술운영기여도, O/H 수입 등 센터 재정운영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허가하되, 운영위원회 심의와 센터장의 승인절차를 따른다.</p> <p>② 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센터 참여교수는 별지 서식 3의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제7조로 이동)	
<p>제10조(프로그램책임자) ① 중점 연구분야 프로그램의 수행 책임교수를 프로그램책임자라 한다.</p> <p>② 프로그램책임자는 해당분야의 연구발전, 사업화 등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고, 해당 프로그램이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삭제)	
<p>제11조(행정지원팀) 행정지원팀은 기획예산, 연구기획, 재무회계, 총무인사 등의 행정지원업무와 건물관리, 기기관리 등의 기술지</p>	(삭제)	

<p>원업무를 수행한다.</p>		
<p>제12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센터장이 임명하는(당연직 포함) 5~7인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행정지원팀장을 간사로 둔다.</p>	<p>제9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센터장이 임명하는 (당연직 포함) 5~7인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며, 행정팀장을 간사로 둔다.</p>	<p>단순 문구 수정</p>
<p>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장단기 발전계획 2. 센터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주요 규정, 제도 및 방침의 제정 및 개폐 4. 센터 참여교수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센터 참여교수의 센터입주에 관한 사항 6. 센터 시설의 할당 및 연구기기의 이용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7. 중점 연구분야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센터의 창업보육에 관한 사항 10. 기타 센터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④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삭제)</p>	<p>위원회 규정 준용</p>
<p>제13조(자문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국내외 인사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p>	<p>(삭제)</p>	<p>운영 안함</p>
<p>제14조(재정) ① 센터는 연구수입, 사업수입, 교육수입 및 기타 수입을 재원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되 매회계연도 말에는 총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센터에 근무하는 대학직원의 연금, 의료보험 등의 행정간접비를 포함한 인건비는 센터에서 부담한다. ③ 전기료, 상하수도료, 청소비 등의 센터 시설 유지비는 대학과 실비 정산한다.</p>	<p>(제8조로 이동)</p>	

<p>④ 센터에서는 재정 자립화 및 특별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년도 말 잉여금 중 일부를 적립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p>		
<p>제15조(회계) 센터의 회계는 재무회계팀에서 대학 연구회계 내 별도의 구분회계로 관리한다.</p>	<p>(제8조 제1항으로 통합)</p>	
<p>제16조(업무처리기준) ① 센터의 운영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 시 그 권한의 일부를 센터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산, 결산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인사 및 지침 설정에 관한 사항 5. 채무부담 발생 원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운영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 <p>② 대학 내 주요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하여 부총장 이상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는 업무 중 예산, 조직, 정원 및 지침 설정에 관한 사항은 기획처장, 연구에 관한 주요사항은 연구처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p> <p>③ 센터의 업무전결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업무전결규정에 준하여 별도로 정한다.</p>	<p>(삭제)</p>	<p>대학 위임전결 규정 따름</p>
<p>제17조(연구원의 의무복무 등) ① 센터장은 센터의 연구계획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연구원에 대하여는 훈련기간의 4배수를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복무의무를 면제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06.9.1)</p> <p>② 센터장은 국외훈련 연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 4의 기준에 따라 당해 연구원의 국외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체재비, 항공료 등)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부터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훈련 중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 외의 사유로 인하여 면직한 때 2.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복귀하 	<p>(삭제)</p>	

<p>지 아니한 때</p> <p>3. 대학에 대한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되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된 때</p> <p>4. 제1항의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③ 제2항에 의한 반납의무자는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납액을 납부하여야 한다.</p>		
<p>제18조(준용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0조(준용기준)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대학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세칙은 2013년 0월 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이 세칙 시행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세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p>	